독립기념관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

우리관은 **정부 가이드라인**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,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대하여 추가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지원자는 **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**에 따라 **입사지원서**를 **작성**하여, **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**으로 인한 **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Ⅰ 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

◈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**착오·누락**으로 발생하는 **불이익**에 대한 **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**
◈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**입사지원서 작성내용**은 **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**
◈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**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**
(입사지원서는 최종제출 후 채용사이트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저장 가능
→ 마이페이지>이력서 조회>하단의 '인쇄아이콘' 클릭>PDF 저장)
◈ **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**

1. 작성 기본원칙

가. (성명)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,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

나. (학교)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(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,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,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) 기재 금지
☞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,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
예: 독립대학교 → 독O대학교(X), OOO학교(O), OOOO교(O), OOOOO(O)
독립대학교 학술지 '독립사학' → 독O사학(X), OOO학(O), OOOO(O)
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'독립대 제0000호' → 독O대 제0000호(X), OO대 제0000호(O)

2. 경력·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※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(인정)

가. 분류기준

구분	금전적 보상 有	금전적 보상 無
기재방법	**경력사항**으로 기재	**경험사항**으로 기재

나. (경력) 경력사항에 기관(회사)명은 기재가능하나,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예: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(X) → OO대학교 부설연구소(O)
독립기념관(O)

다. (경험) 동아리·학술연구·프로젝트 등에 직·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예: HKU OO동아리(X) → 동아리(O), OO동아리(O), ~관련 동아리(O)

3.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작성 유의사항

가. (공통)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※ Ⅱ-2-가.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참조

나. (예외) 논문 언급(내용, 과정)은 가능하나, 인적사항·학교명 기재 금지

Ⅱ 서류전형 적합여부 검토 기준 및 예시

1. 서류전형 적합여부 검토항목

구분	가	나	다
항목	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	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	응시자격 적합 여부

※ 3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처리

2. 검토항목별 처리 기준 및 예시

가.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: 성별·신앙·연령·신체조건·학력·학교·혼인·임신·가족관계·출신지역 등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

항목	기준 및 예시
성별	· **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**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언니, 오빠, 형, 누나, 군경력(사병), 남편, 아내 등 기재***
신앙	· **종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**(종교활동 등)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교회 수련회, 여름성경캠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~***
연령	· **생년월일, 연령 등**을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독립기념관이 개관하던 해에 태어나~***
신체조건	· **신장, 체중, 용모에 대한 내용**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188cm의 큰 키로~***
학력·학교	· **학력·출신학교**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대학교 졸업 시 한국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고~*** - 예: ***교원자격증 자격번호 작성 시 학교명 기재*** - 예: ***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학교도메인 메일주소 사용***
혼인·임신	· **결혼여부, 자녀유무, 임신여부 등에 대한 내용**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육아휴직을 통해 아내와 육아를 분담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며~***
가족관계	· **가족의 직업, 출신지역 등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**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어렸을 때부터 독립기념관에 근무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자주 방문하여~***
출신지역	· **출신지역에 대한 내용**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- 예: ***천안지역 토박이로서 독립기념관을 평생직장으로~***

나. 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 :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

○ **(분량)**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10% 미만 작성한 경우

○ **(표절)** 전체 표절률 30% 이상, 또는 문항표절률 50% 이상인 경우 불합격 처리

○ **(기타)** 타 기관 제출용으로 작성, 기관명 오류, 특정 문장·단어·문자·기호의 반복 등에 해당하는 경우

다. 응시자격 적합 여부 :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

○ **(요건미흡)**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○ **(중복지원)** 2개이상 분야 지원, 또는 1개분야에 2건이상 제출한 경우

○ **(결격해당)**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《채용 결격사유》

○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

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병역법」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병역법 제76조제1항

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,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2. 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3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